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 처리계획

평 창 군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

1. 사업명 : 미탄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 지적사항

《부족예산확보 및 강원도와 예산부담의 명확화》

- 실질적인 소요사업비 310백만원에 부족되는 예산90백만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통하여 조속히 확보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소방업무의 소관청은 강원도이므로 착수 건축되는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부담비율을 명확히하여 군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처리계획

- 실질적인 소요사업비 310백만원에 부족되는 예산90백만원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가중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동절기 시 공사중지 조치후 해빙과 동시 재착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소방업무는 강원도의 소관사무로서 현재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까지는 전액 강원도의 부담으로 건물신축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소방출장소의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건축비의 일부(출장소당 1억원 규모)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군비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방출장소의 신축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차후 소방출장소 신축시 소방업무의 소관청인 강원도의 도비부담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명 :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지적사항

《조속한 사업시행 및 보완시설 추가설치》

- 2003.12.31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 현지확인시 5%, 금번 확인당시(2003.10.18)35%의 공정률로 늦어 잔디파종을 제외한 공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지 매우 걱정스러운 바,
- 공사업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공기 연장발생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적극성이 결여된것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설계변경을 제외한 공기연장으로 공사비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라며,
- 상반기 현지확인시 거론된 바 있는 조깅코스, 로얄박스, 화장실 등 추진상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명실공히 지역복지시설과 전지훈련장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바람

○ 처리계획

- 공사중지 예정일까지 체육시설공, 건축공을 마무리하고 조경수 식재 및 축구장 잔디조성공사는 잔디 뿌리의 활착 및 동절기 냉해방지를 위하여'04년 봄철에 시공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가을에 식재할 수 있는 식목은 선별하여 조경할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제외한 공기연장으로 공사비의 증액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조깅코스, 로얄박스, 화장실 등 추가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제18조(용도구획계획)에 저촉되어 추가설치가 어려움

3. 사업명 : 상안미폐천부지 활용방안

○ 지적사항

《지역여건 부합되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 강구》

- 2002년 2월 삼성에버랜드 용역결과를 보면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소득 연계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단순투자에 급급하기 보다는 투자 후 나타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선정하기 바라며 평창군수가 대화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하여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을 이해와 양해를 선행하여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상안미 폐천부지의 용역결과는 지역여건, 투자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 사업명 : 면온리 산355번지 펜션허가사업

○ 지적사항

《위법사실에 대한 의법조치 및 피해방지시설 설치》

- 봉평면 면온리 산355번지 9,900㎡ 전원주택 허가사항을 보면 경사도가 급하여 목적허가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허가 조치되어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산림 무단훼손으로 인한 진입로 확장과 인근 하천 대규모 불법 토석채취를 통한 석축 축조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타 소유의 임지를 불법 사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등 민원이 발생함에도 위법사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하천 내 불법 토석채취, 무단벌채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거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법하게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유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사업은 산림형질변경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이 요구됨.

○ 처리계획

-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무허가 입목벌채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 피해방지대책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도로부분을 복구하고, 건축은 계획대로 필로티공법을 활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조치
- 형질변경지 복구설계승인 시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필요시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사업명 : 금당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지적사항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금당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평창군이 1998년7월9일 강원도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 놓고도 그 동안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해 놓은 사업으로서 대주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 그동안 약 5년 동안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면 균유지만으로 추진하는 방법, 토지가 감정을 현실가격으로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기대화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처리계획

- 도로확 · 포장계획으로 지가상승요인이 되어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토지가 감정을 현실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고 균유지로만 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대상지역 내 시설입지가 가능한 평지 부분은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어 시설입지가 어렵고, 기타부분은 경사지로 구성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코자 함.

6. 사업명 : 마지1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날개벽 추가시공〉

- 날개벽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실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양쪽 날개벽을 추가 시공하기 바라며, 우리군 교량 가설형태를 보면 날개벽이 설계에 꼭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현상이 빈번한 바, 향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하여 주기 바람.

○ 처리계획

- 날개벽시공 예산에 대하여는 수해복구비 예산잔액으로 시공토록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 앞으로는 교량설계시 구조물 주변 보호시설(날개벽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7. 사업명 : 창리천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준설을 통한 수해사전예방〉

- 현재 창리천은 하상이 높아져 있어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한다 하여도 하천범람으로 재발생할 우려가 있어 투자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창리천에 대한 전반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처리계획

-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로 창리천내 퇴적된 토사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위험이 없도록 할 계획임.

8. 사업명 : 창리~평안 무공해반출도로 확·포장공사

○ 지적사항

〈시급한 구간 우선사업선정 및 국비확보 철저〉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일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 공사비 30억중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행정불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과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급한 구간을 우선선정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자원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당초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급한 구간인 회동 마을회관 앞에서 교량까지를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 완료하여 통행불편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하며 잔여구간의 사업비 또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9. 사업명 : 대미천(소하천)정비공사

○ 지적사항

〈미비점 추가시공〉

-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량끝 날개벽 부분에 대하여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하고 공사중 하천에 있는 토사와 교량중심으로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대미천(소하천)정비공사 설계상 기 교량끝까지 호안(자연석쌓기)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시공시 교량 상,하류에 대해 준설을 하여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임.

10. 사업명 : 차항·서넉골천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식생호안 공사방법 재검토〉

- 차항천 서넉골천 수해복구공사 구간중 강변A 뒷쪽 290M구간의 공사방법인 「식생호안」은 동절기 저온과 급속한 유속등 우리군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공사방법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평창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중인 구간에 대하여는 철저한 마무리를 통하여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 처리계획

-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호안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 사업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현지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 시공된 식생호안 공간부분은 콘크리트로 채워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임.

11. 사업명 : 오리골천 및 반장골천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하천 유속이 급한지역에 대한 개비온 공사방법 재검토 및 기초부분 설계철저〉

- 본공사의 개비온 하단부 기초공사가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하단부가 파여 유실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산간 하천유속이 급한 지역에 이 공사방법이 적합한지 재검토해보고, 향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실여건을 고려한 적합한 공사방법 설계로 수해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라며 본 공사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기 바람.

○ 처리계획

- 금번 수해복구공사는 하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하폭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사업시행코자 하며,
- 현실에 맞는 하천공법을 적용 복구사업을 시행하겠음.

12. 사업명 : 횡계천(제1공구)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하천굴곡 지역에 대한 공사시행 방법 철저〉

- 이 지역 수해복구공사 형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다 하여 하천폭을 줄이고 선형변경을 통한 심한굴곡으로 금년도 태풍 매미에 재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복구를 한다하여도 계속적인 수해우려가 확실시 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수해복구시 하천선형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선형선택을 통하여 재발생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횡계천 주암교 하류 우안 제방에 대하여는 주민(토지주)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개량시공하여 향후 수해 재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사업시행코자 함.

13. 사업명 : 용산(횡계5리 버들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 **지적사항**

〈부실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

- 버들골 찰쌓기 구간 붕괴부분 확인결과,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공에 너무 많은 헛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설계미흡, 부실시공 등 붕괴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는 물론 시공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현지여전상 하상구배가 매우 급하고 만곡이 심하여 호안 세굴이 심함.
- 인접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하폭을 넓혀 시공하고 구간구간 하상보호 공을 설치하여 기초가 세굴되지 않도록 시공할 계획임.

14. 사업명 :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

○ **지적사항**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에 의하여 제시된 추진상황을 보면 "합당한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여 건축물을 이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의 위치한 문제점, 사업의 타당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더 이상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특히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을 여념하여 예산을 당연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람.

○ 처리계획

〈설치경위〉

- 봉평면 무이2리에 설치한 본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200백만원(국비140 군비60)의 사업비로 2001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지자체가 시설비를 지원·건설하여 생산자(단체·조직)가 공동으로 운영토록 한 고정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업이며,
- 사후관리기간은 준공 후 3년간이며 매각, 타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현행 문제점〉

- 현재까지 무이2리영농회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으나, 유동 소비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실적이 저조함.
- 마을에서 전통식품체험장을 부가하여 운영활성화를 모색하여 보았으나 농지전용시 용도(공익시설)제한으로 인하여 음식물 취급 판매행위 허가취득이 불가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로만 이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활용실적이 부진하며,
- 사유지인 장터부지를 부지소유자로부터 관리기간 이후에는 소유권을 활용토록 요구하고 있어 부지매입을 상의하였으나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관리기간(준공후 3년간) 후에도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대책〉

- 현재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운영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부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기간이후의 문제점인 부지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 추가예산이 필요한 건축물 이전설치, 타용도로의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되지 않고 본 시설물이 주민을 위하여 효율적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전반적인 공사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사 설계변경에 있어 예산잔액 끼워 맞추기식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와 효율적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 준공검사후 미비점과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공사 관리 감독과 준공검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규모가 큰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성있는 간부공무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는 방안등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계획

- 공사설계변경은 공사계약 및 공사착공에 따라 공사감독공무원의 복무규정(강원도건설공사감독관복무규정 강원도훈령 제1430호)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고
- 공사시공중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①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② 공사비절감및시공기간 단축효과가 현저할 경우 ③ 발주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예: 주민건의,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주민불편해소등) 설계변경을 하게 되며 설계변경은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주민요구민원사항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많아 설계변경시 예산잔액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감독공무원은 출장 복명하여 현장여건 보고후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감독 및 공사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없는 공사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건의사항 처리계획

1.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건의사항

〈관광자원화 및 개발계획수립〉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자원화 및 개발계획을 수립,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노력하기 바람.

○ 처리계획

- 중앙부처의 협의조건이 "향후 동 지역 이 관광단지화 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조치" 토록 되어있으나
- 풍력발전단지 준공 후 신문(지방+중앙지), TV(KBS, MBC, SBS)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우리군 관광팸프렛 등에 게재하는 등 관광상품화 추진에 노력하고자 함.

2. 사업명 :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 건의사항

〈부족예산 조속히 확보〉

- 피로연장 완공에 필요한 부족예산 4억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2회 추경 예산반영을 통하여 명실공히 투자효과 증대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건축하고 만약 재원사정으로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불가할 시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처리계획

- 부족예산 4억원에 대하여는 2003년도 2회추경에 예산계상 요구 중에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금년도에 예산 미확보시 2004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음.

3. 사업명 : 계장~하일간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구 대책마련

○ 건의사항

〈대체노선 필요사업비 조속한 확보〉

- 현행 통행구간은 해빙기 우기철 낙석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일교등 대체노선필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처리계획

- 우선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 입구에 대하여는 87백만원을 투자 호안옹벽 50m, 박스5m, 포장 50m등을 2003년도에 추진, 안전사고 예방코자 하며
- 낙석이 심한 구간은 암으로 이루어져 정비가 지난하므로 2004년도부터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를 투자, 하일교가설 및 진입로 확보를 통하여 하일, 원당 마을의 통행 위험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사업량 : 교량가설 L=140m(B=8m), 진입로 L=500m
 - 사업비 : 3,375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5 ~ 2006. 12. 31

3. 사업명 : 대화~개수(군도4호선)확포장공사

○ 건의사항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준공〉

- 필요사업비에 대한 조속한 예산확보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처리계획

- 총가 발주된 1.7km 구간의 사업비 25억원중 2003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하부)중에 있으나 개축지구 사업비의 소액 배정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개축지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년차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계획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 사업명 : 이목정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건의사항

〈미정비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추진〉

- 본 구간중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확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잔여구간 1km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사업의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바람.

○ 처리계획

- 정비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 국도에서부터 1km까지를 755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하였으며 골안이골 마을 종점부까지 1km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860백만원을 투자 마무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6. 사업명 : 상두일천 소하천 정비사업

○ 건의사항

〈반대편 부분에 대한 공사시행 검토〉

- 본 소하천 한쪽 부분에만 공사가 시행될 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대편 쪽의 범람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근거조사를 통하여 반대쪽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 처리계획

- 상두일천 좌안(L=120m)은 하천부지 절토후 자연제방을 유지토록 설계되었으나, 호안 미시공시 인근 사유지의 유실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산범위내에서 호안(자역석쌓기) 시공할 계획임.

7. 사업명 : 호명교 수해상황

○ 건의사항

〈재원대책 마련 및 위치선정시 신중한 검토〉

- 필요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라며 교량의 위치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투자효과 증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여 주기바람.

○ 처리계획

-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토록하여 용역기간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위치, 사업규모등을 결정코자 하며 낙후된 호명, 송정이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량을 가설코자 합니다.

- 교량연장 : L=145m
- 소요사업비 : 68억원(수해복구비)
- 사업기간 : 2004. 3 ~ 2005. 6. 30

8. 사업명 : 지방2급 하천(송천1지구) 수해복구공사

○ 건의사항

〈주차장 조성 적극검토〉

-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본 위치는 차량 추락위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있어 조성이 지난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역형편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피한 바, 안전사고 위험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도시계획 구역내로 관련부서 (지역도시과, 민원봉사과)에 통보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9. 사업명 : 장평취락지구 개발사업

○ 건의사항

〈평창관문으로서의 우선추진 검토〉

- 평창의 관문인 장평에 투자되고 있는 장평취락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순위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여 평창의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처리계획

- 장평 취락지구내 도로계획은 총 37개 노선 4,940m로서 6개노선에 1,270m가 기 개설되었으며, 금년에 3개노선 209m 시행중임.
- '04년에는 3개 노선(길다방 뒷편) 236m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계획도로 부분에 대하여도 평창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년차별로 계속 추진하겠음.